

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건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3.

발의자 : 이건태 · 김동아 · 박지원

조인철 · 박군택 · 전현희

진선미 · 위성곤 · 최혁진

복기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ODA의 핵심 분야가 기존의 경제개발에서 기후변화대응, 환경보전, 보건·감염병 대응, 재난·위기 대응,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등 지속가능성·포용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대외경제협력 내용에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·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법

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1조 및 제7조).

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원하고”를 “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· 보건 · 재난예방 등 글로벌 개발수요에 부응하며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산업발전”을 “산업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 · 환경보전 · 보건 · 재난예방 ·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산업발전”을 “산업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 · 환경보전 · 보건 · 재난예방 ·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8.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, 모니터링, 사후평가 및 성과 환류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며, 이하 “융자등”이라 한다) 또는 출자	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개도국의 <u>산업발전</u> 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	4. ----- <u>산업발전</u> 및 <u>기후변화 대응 · 환경보전</u> <u>· 보건 · 재난예방 ·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</u> -----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8.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의